

제25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「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·분석 및 평가 조례안」을 심사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게재하여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심사예고 합니다.

2016. 5. 16.

임실군의회회장

1. 제정이유

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·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

2. 조례 주요내용

- 가. 조례 제정의 목적(안 제1조)
- 나.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 설치(안 제2조)
- 다. 협의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- 다. 협의회원 등록(안 제4조)
- 라. 협의회 기능(안 제5조)
- 마. 현지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- 바. 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에 대한 사항(안 제7조)
- 사. 회의개최 및 서면동의에 대한 사항(안 제8조)
- 아. 협의회 회의록 작성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- 자. 협의회원에 대한 사항(안 제10조)
- 차.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(안 제11조)
- 카. 기타 운영세칙(안 제12조)

3. 참고자료

가. 관계법령 :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협의 등

1) 부패영향평가/규제심사 : 원안동의

2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의견반영(제3조제1항 협의회 구성)

라. 기 타

1) 입법예고(2016.2.22~3.13)결과 : 특기할 사항 없음

2) 비용추계서 : 미첨부사유서(붙임)

3) 관련법령 발췌문 : 붙임

임실군 자연재해원인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9조에 따라 임실군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·분석·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협의회 설치)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른 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(이하 “지역본부장”이라 한다)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“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”(이하 “협의회”라 한다)를 설치한다.

제3조(협의회 구성·운영) 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되,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·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원으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협의회 회장(이하 “협의회장”이라 한다)은 안전관리과장이, 간사는 업무 주관 담당이 된다.

③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조사·분석·평가 대상 :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

2. 협의회 구성 시기 : 본 항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

3. 협의회 해체 시기 : 조사·분석·평가 완료 후

4. 협의회 운영 방법 :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과반수 참석 및 과반수 동의(서면 포함)로 결정한다.

5. 협의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

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·시행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 업무 담당 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·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.

1. 방재 관련 협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 또는 학회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2. 방재 관련 각급 대학(부설 기관 포함)
3.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(지점 또는 지부 포함)
4.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

제4조(회원 등록 등) ① 회원의 등록(변경)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(변경)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,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5조(협의회 기능)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관한 사항
2.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
3.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·분석·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6조(현지 조사 업무) ① 협의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.

② 협의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된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, 지역,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.

③ 협의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,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·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7조(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) 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

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·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 「자연재해대책법」 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.

제8조(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) ① 협의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
② 협의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,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.

③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·질의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④ 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·보관하여야 한다.

1.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
2. 참석자 성명(전문기관 또는 단체명)
3. 의안 내용
4. 회의 결과
5. 참석자 발언 요지

6.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회원 직무) ① 제3조 규정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.

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.

제11조(경비 지원) 협의회장은 회원에게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

1. 「임실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」 제3조, 제4조에 의한 수당·여비
2.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「통계법」에 따라 조사·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
3. 그 밖에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

제12조(운영 세칙)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지 제1호서식】

『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』
등록(변경) 신청서

회원번호		희망 업무 분야	<input type="checkbox"/> 예 방 <input type="checkbox"/> 복 구	<input type="checkbox"/> 대비·대응 <input type="checkbox"/> 정책관련
접 수	년 월 일			

개인·기관명(단체명)			
사업자등록번호			
대표자 직위 및 성명			
주소 : (-)	전화 : ()		
	FAX : ()		
E-mail :			
Home-page :			
담당자 직위 및 성명 :	연락처	사무실 :	
		휴대전화 :	
주요 업무 분야 : (변경 사유)			

위 기관(단체)은 '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협의회' 회원으로 등록(변경)하고자 「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·분석·평가 조례」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(기관·단체) :

인

【별지 제2호서식】

임실군 제〇〇호

회 원 증

개인·기관(단체)명 :

대 표 자 :

(사업자 등록 번호) :

주 소 :

위 개인·기관(단체)은 「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·평가 조례」 제3조에 따른 재해 원인의 조사분석·평가를 위한 '임실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·평가 협의회' 회원임을 증명함.

년 월 일

임실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

임실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·운영 조례안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임실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1호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

4. 작성자

안전관리과장 김 진 귀

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 통보서

관리번호	2016A전북임실021		
정책명	임실군 자연재해 원인조사·분석 및 평가 조례		
소관부서	기관명	전라북도 임실군	
	부서명	안전관리과	
	담당자명	한국남	전화번호 063-640-2614
분석평가서 제출날짜	2016년 4월 14일		
주요 분석평가 내용 (안전관리과)	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, 분석 및 평가를 위하여 협의회 구성, 운영 및 현지조사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		
종합 검토 의견 (분석평가책임관)	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사항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자체개선안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선의견		
	제3조 1항 협의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는 자체개선안에 동의 <input type="checkbox"/> 검토의견 반영계획서 : 해당 없음		
<p>「성별영향분석평가법」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2016년 04월 16일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주 민 복 지 과 장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담당자/연락번호 : 윤진/063-640-2123)</p> <p>안전관리과장 귀하</p>			

■ 자연재해대책법

제9조(재해 원인 조사·분석 등) 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시설 등에서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.
<개정 2014.5.14.>

② 중앙대책본부장 또는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예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직접 조사·분석·평가할 수 있다. <신설 2014.5.14.>

③ 제2항에 따라 재해의 발생원인 조사 등을 할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<신설 2014.5.14.>

④ 지역대책본부장이 재해 원인을 조사·분석·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<개정 2013.8.6., 2014.5.14.>

[전문개정 2011.3.7.]